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
2019. 11. 26(화) 10:00

## 제219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

# 검 토 보 고 서

**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**
**(복지교육국 소관)**

## 복지건설위원회

전문위원 추병수

#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
# 검 토 보 고 서

## 1. 제안경위

가. 의안번호 : 제1956호

나. 제 출 자 : 강수정의원

다. 제출일자 : 2019. 11. 15.

라. 회부일자 : 2019. 11. 15.

## 2. 제안이유

「청소년 기본법」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금천구의 정책 수립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위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가. 청소년참여위원회 기능에 관한 규정(안 제3조)

나.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(안 제4조)

다. 위원회 위촉, 해촉, 직무, 회의 등에 관한 규정(안 제6조~제9조)

라. 위원회 의견수렴에 관한 규정(안 제10조)

마. 위원회 수당, 보상, 위탁 등에 관한 규정(안 제11조~제13조)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

(1)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5조의2

(2) 「청소년 기본법 시행령」 제2조의2

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예산조치

다. 입법예고 : 2019. . . ~ . .

## 5. 검토의견

### 가. 조례안 제정 필요성

본 조례안은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원 발의 되었으며 총 14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
### 나. 주요 내용

- 안 제3조에서는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상위법「청소년 기본법」 제5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위원은 공개모집과 추천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구성한 것은 기회균등을 통한 참여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.
- 안 제5조~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권리와 의무 및 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,
- 안 제9조～제13조에서는 회의 개최, 구청장의 위원회 의견 수렴, 참석 위원과 자문단에 대한 여비 등 경비에 관한 사항, 위원 표창 등 보상에 관한 사항, 위원회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
### 다. 검토의견

○ 본 제정 조례안은 『청소년 기본법』에 근거하여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여 청소년들의 제안이 정책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자치권 및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으로, 입법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특별히 저촉됨이 없이 조례 제정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.

○ 참고사항으로 금천구의 청소년 참여활동은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청소년의회, 아동의회가 구성・운영되고 있음.

※ 금천구 청소년 참여 정책 심의, 협의 등 기구 현황

| 위원회 | 근거법령 | 주요기능 | 구 성 원 |
|---|---|---|---|
|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|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2조 | ○아동친화도시 조성의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자문<br>○아동친화도시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자문 등 | ○위원 14명<br>○위원장 : 부구청장 김 영 성<br>○위원 :<br>1.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<br>2. 교육·법조·경찰·체육·아동복지 또는 문화 등의 분야에서 아동정책과 도시공간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|
| 청소년의회 |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20조 | ○청소년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참여 활동<br>○주민참여예산 교육·청소년 분야 심의 등 청소년 예산에 대한 의견 수렴 | ○의원 20명<br>○의장 : 강민하(서울디자인고 1학년)<br>○의원 : 관내 청소년 |
| 아동의회 |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20조 | ○아동관련 정책 및 지역문제에 대한 토론 및 의견 제출 | ○의원 44명<br>○대표 : 허준(서울금동초등학교 5학년)<br>○의원 : 관내 초등학교 학생 |

# 관계법령

## □ 청소년 기본법

**[시행 2019. 6. 19.] [법률 제15986호, 2018. 12. 18., 일부개정]**

**제5조의2(청소년의 자치권 확대)** ①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·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, 청소년 관련 정책의 심의·협의·조정 등을 위한 위원회·협의회 등에 청소년을 포함하여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7. 12. 12.>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. <신설 2017. 12. 12.>

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 <신설 2017. 12. 12.>

⑥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신설 2017. 12. 12.>

[전문개정 2014. 3. 24.]

## □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

[시행 2019. 6. 19.] [대통령령 제29845호, 2019. 6. 11., 일부개정]

**제2조의2(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** ①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(이하 “참여위원회“라 한다)의 위원은 성별 · 연령 · 지역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.

② 참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하며, 참여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.

③ 참여위원회는 효율적인 정책 제안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④ 참여위원회는 청소년 관련 정책에 관한 의견 제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, 토론회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.

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참여위원회가 청소년 관련 정책의 전문적 ·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자문할 수 있도록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18. 6. 5.]